

(ISSN : 2983-3744)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100055-14

OPEN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 2025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청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100055-14

(ISSN : 2983-3744)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 2025



Contents 목차

제 1 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일반현황

1

- 1. 개요 3
- 2.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리 4
-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운영현황 4
- 4.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주요 통계 6

제 2 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 및 관리절차

9

- 1. 국가직무발명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권 등록절차 11
- 2. 해외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 및 연차료 납부 15

제 3 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처분절차

17

-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통상실시권 유상처분 19
- 2.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통상실시권 무상처분 21
-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전용실시권 유상처분 22

제 4 장

국가직무발명보상금 및 사후관리

25

- 1. 보상금 종류 27



2. 보상금액	27
3. 보상금 지급시기	27
4.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처분보상금 지급방법	28
5.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실시계약 사후관리 절차	29

제 5 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서식

31

1. [직무발명 신고] 관련 서류	33
2. [국가직무발명특허 등록] 관련 서류	36
3. [국가직무발명특허 처분] 관련 서식	40
4. 통상실시권 계약서(유상, 무상)	48
5. 민간과 공동연구 수행 시 계약서	66



부 록

69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Q&A	71
2.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제도 해설	81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법령 내용	100
4. 2024년 주요개정내용	156
5. 직무발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6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 2025





제 1 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일반현황

1. 개요	3
2.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리	4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운영현황	4
4.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주요 통계	6





제1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일반현황

1

개요

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舊 국유특허)’의 개념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은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국가승계 후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외국특허로 등록된 권리이다.

- ☞ 기존의 ‘국유특허’ 명칭은 국가공무원 등에 의해 형성된 직무발명이 아닌 지식재산 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명칭 변경(‘24. 11.)
- ☞ 직무발명이 아닌 국가명의 등록특허는 국유재산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관련기관(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

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업무의 관장

- 특허청 : 직무발명 장려 및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처분·관리 및 활용 촉진
- 발명기관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국가승계 및 국내·외 특허출원, 출원 중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의무 :
 - 처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에 협력할 의무
 - 직무발명 출원 시까지 발명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처분방법

처분종류	처분방법	조 건
통상실시권	수익계약	자율 선택 (‘통상실시 원칙’ 폐지)
전용실시권	경쟁입찰	
매각	경쟁입찰	



- ☞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나 실시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준비기간, 또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잔여기간만큼 연장 가능
- ☞ 등록 후 3년 이상 미활용 국가직무발명특허에 대해 최대 3년간 무상통상실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21. 10.)

라. 국가직무발명보상금

- 권리 등록 시 : 등록보상금 (발명자 대상)
- 유상 처분 시 : 처분보상금 (발명자 대상) · 기여보상금 (수탁기관 대상)

2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리

가. 법적 근거

-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7항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공포(1972.12.14.)

나. 2025년도 예산 : 2,051백만원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운영현황

가. 전산관리시스템 구축('05.11.) : 등록, 처분, 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프로그램 구축

나. 사업화 촉진

- 활용촉진을 위한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 도입('06.4.)
- 국유특허 무상실시요령 개정('10.2.) :
※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무상실시 기간을 1년→3년으로 연장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11.9.30.) 및 동 규정 시행규칙 개정('11.10.7.)
※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



-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11.10.)
 - ※ 수탁기관의 지정 및 위탁 업무의 처리절차 등을 규정
- 농업분야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現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시범적으로 위탁('11.12.)
 - ※ 위탁 범위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홍보 등 관리
 - ※ 위탁 근거 : 발명진흥법 제56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 국유특허권 유상처분 시, 계약기간 만료 후, 실제 사용한 수량만큼 정산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후정산 방법으로 변경('13.10.)
- 축산분야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現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14.8.)
 - ※ 위탁 범위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개발된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홍보 등 관리
- 수탁기관 지정 확대('15.7.)
 - ※ 한국임업진흥원(산림분야), 한국발명진흥회(수산 등 기타분야) 추가 지정
- 국유특허 전용실시 기본계획 수립('16.3.)
 - ※ 전용실시 확대를 위한 처분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 마련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혁신 방안」 발표('18.10.)
 - ※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18. 10. 24.)
-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개정으로 수탁기관의 전용실시 업무 수행 시작('19. 10)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정('20. 11.)
- 발명진흥법('21.4)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규정('21.10) 등 하위법령 개정
 - ※ 국가기관 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전용실시권 갱신 제한 완화 등을 규정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4. 11.)
 - ※ 혼동가능성이 있는 기존 “국유특허권” 명칭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변경
 - ※ 통상실시의 원칙 폐지, 기관포상금을 기여보상금으로 대체, 출원 중 직무발명의 실시료 및 보상금은 발명기관의 장이 관장해야함을 명확히 함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개정('24. 12.)

4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주요 통계

가. 연도별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신규등록 및 보유현황

구분	신규 등록 (건)					누계 (건)						
	특허	실용	디자인	외국특허	계	특허	실용	디자인	외국특허	이전	소멸	계
'08	222	14	15	2	253	1,504	291	120	40	186 (특155, 실31)	147 (특66, 실60, 디21)	1,955
'09	149	11	34	9	203	1,628	294	153	49	192 (특161, 실31)	175 (특85, 실68, 디22)	2,124
'10	188	13	16	11	228	1,784	267	169	60	197 (특166, 실31)	242 (특112, 실108, 디22)	2,280
'11	316	10	28	7	361	2,080	255	196	67	204 (특173, 실31)	278 (특125, 실130, 디23)	2,598
'12	432	21	41	15	509	2,491	240	237	82	218 (특187, 실31)	321 (특132, 실166, 디23)	3,050
'13	581	26	41	21	669	3,060	219	278	103	218 (특187, 실31)	380 (특144, 실213, 디23)	3,660
'14	676	34	51	8	769	3,708	210	326	111	218 (특187, 실31)	454 (특172, 실256, 디26)	4,355
'15	601	16	85	25	727	4,258	195	394	129	218 (특187, 실31)	560 (특223, 실287, 디43, 해7)	4,976
'16	539	12	121	19	691	4,832	174	502	143	218 (특187, 실31)	578 (특189, 실320, 디57, 해12)	5,651
'17	651	19	76	21	767	5,429	164	562	112	220 (특187, 실31, 해2)	727 (특243, 실349, 디73, 해64)	6,267
'18	712	18	93	36	859	5,954	155	622	142	220 (특187, 실31, 해2)	984 (특430, 실376, 디106, 해72)	6,873
'19	674	11	99	25	809	6,519	145	717	161	220 (특187, 실31, 해2)	1,124 (특539, 실397, 디110, 해78)	7,542
'20	672	12	90	27	801	7,089	136	804	184	220 (특187, 실31, 해2)	1,254 (특641, 실418, 디113, 해82)	8,213
'21	692	15	128	31	866	7,577	121	922	212	220 (특187, 실31, 해2)	1,501 (특845, 실448, 디123, 해85)	8,832
'22	621	7	103	14	745	8,100	111	1,019	226	220 (특187, 실31, 해2)	1,622 (특943, 실465, 디129, 해85)	9,456
'23	649	5	79	40	773	8,674	95	1,080	234	220 (특187, 실31, 해2)	1,768 (특1,018, 실486, 디147, 해117)	10,083
'24	551	3	134	35	723	9,124	80	1,183	243	220 (특187, 실31, 해2)	1,944 (특1,119, 실504, 디178, 해143)	10,630

나. 수탁기관별 관리 현황('24)

수탁기관명	분야	관련 발명 기관	관리현황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11. 12.~)	농·축산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376건 (50.6%)
한국임업진흥원 (2015. 7.~)	산림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등 산림청 소속기관	728건 (6.8%)
한국발명진흥회 (2015. 7.~)	수산 · 의료 등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재활원, 질병관리청 등	4,526건 (42.6%)

다. 연도별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계약체결건수 및 실시료수입 현황

구 분	계약체결건수 (건)							실시료수입 (백만원)		
	등록		출원		계			등록	출원	계
	유상	무상	유상	무상	등록	출원	총계			
'06	129	20	58	1	149	59	208	531	140	671
'07	183	9	63	0	192	63	255	431	83	514
'08	147	14	110	0	161	110	271	425	295	720
'09	192	12	108	12	204	120	324	408	219	627
'10	226	13	111	29	239	140	379	551	192	743
'11	238	5	230	4	243	234	477	695	587	1,282
'12	332	56	285	5	388	290	678	609	774	1,383
'13	351	40	279	0	391	279	670	716	434	1,150
'14	428	26	191	8	454	199	653	196	81	277
'15	533	113	201	-	646	201	847	233	397	630
'16	634	108	309	6	742	315	1,057	465	236	700
'17	812	113	260	-	925	260	1,185	498	62	560
'18	897	123	231	1	1,020	232	1,252	767	500	1,266
'19	985	172	259	4	1,157	263	1,420	539	140	679
'20	1,362	201	356	0	1,563	557	1,982	952	670	1,623
'21	1,323	128	264	1	1,587	129	1,726	1,292	587	1,879
'22	1,275	36	264	3	1,311	267	1,578	1,575	608	2,183
'23	1,041	34	288	1	1,329	35	1,364	1,272	609	1,880
'24	1,002	32	250	1	1,034	251	1,285	1,896	549	2,445

라. 연도별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활용률

연도	전체 유효등록건수(A)					활용건수(B)*					활용률 (B/A)
	특허	실용	디자인	해외	계(A)	특허	실용	디자인	해외	계(B)	
'21	7,577	121	922	212	8,832	2,124	36	80	8	2,248	25.4
'22	8,100	111	1,019	226	9,456	2,175	22	81	9	2,287	24.2
'23	8,674	95	1,080	234	10,083	2,335	15	84	10	2,444	24.2
'24	9,124	80	1,183	243	10,630	2,324	11	83	11	2,429	22.9

* 활용건수는 실시된 권리기준임. 즉, 하나의 권리가 여러 번 실시되더라도 1건으로 산정함.



제2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 및 관리절차

1. 국가직무발명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권 등록절차 ··· 11
2. 해외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 및 연차료 납부 ····· 15





제2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 및 관리절차

1

국가직무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록절차

국가 단독 권리인 경우

- ① **발명자**는 발명 즉시 발명기관의 장에게 직무발명을 신고한다.
 〈서식〉
 - 직무발명신고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류〉
 -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자의 직무, 직무발명의 성질, 발명 당시 발명자 지분 등 기재
 - 직무발명의 요약서
 :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
-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 여부 및 국가승계 여부를 판단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승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출원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 ④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에 따라 등록결정 혹은 등록거절 된다.
- ⑤ 등록결정이 나면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등록결정서를 송부한다.
- ⑥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을 수신기관으로 하고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직무발명특허 등록 요청 공문을 시행한다. (등록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개월 이내 등록되지 않을 경우, 출원포기로 간주되고 회복 불가하므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요청해야 한다.)



〈서식〉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첨부서류〉

-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발명자 인적사항, 지분율, 계좌번호 등을 기재
- 등록결정서

⑦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국가직무발명특허 담당자는 특허넷을 통해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에 국가직무발명특허 등록을 의뢰한다.

⑧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에서 등록을 완료한다.

⑨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국가직무발명특허 담당자는 국가직무발명특허 등록요청을 했던 발명기관에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서 등록결과를 통지한다.

〈첨부서류〉

- 등록원부 및 등록증

⑩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국가직무발명특허 담당자는 등록요청공문, 결과 통지공문, 등록원부 및 등록증을 전자문서화 하여 특허넷에 업로드한다.
등록보상금은 추후에 작업하여 지급한다.

대한민국과 민간과의 공동권리인 경우

①~② 위와 동일하다.

③ 발명기관의 장 또는 민간공동권리자는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와 민간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고, 국가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참고로, 공동권리자 간의 지분을 기재하지 않으면 균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추후 발생하게 될 실시료 수입의 분배 등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지분율을 정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자 및 발명자 등록 경우의 수〉

권 리 자		발 명 자	
대한민국	기업체(민간인)	공무원	민간인
○		○	
○		○	○
○	○	○	○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일 경우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해야 함〉

(발명기관 참고용) 공공·민간 간 공동연구계약 시 주의사항

1. 지식재산권 소유문제

2. 공동명의 출원 시 실시에 관한 내용

- 지분관계 명시[(예시) 대한민국 70%, 민간인 30% 등]
- 자기 실시할 경우 실시조건 반영
예) 을이 실시할 경우에도 국가지분만큼 실시로 납부의무 부과 등
- 연차료 미납 시 권리귀속 문제
- 특허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조건 명시 등

※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간에 공동연구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직무발명특허로 출원, 등록할 경우에는 위의 주의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은 연구 결과물을 특허로 출원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국가 단독명의로 하여야 사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국가기관에서 민간기업에 용역을 주어 개발되는 특허 등의 발명자에는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아니한 발주기관의 공무원이 발명자로 등재될 수 없음

- ④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에 따라 등록결정 혹은 등록거절 된다.
- ⑤ 등록결정이 나면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등록결정서를 송부한다.
- ⑥ **민간공동권리자**는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고 대한민국과 민간의 공동명의 특허를 등록한다. (국가는 등록료 면제 대상이지만, 민간 공동권리자는 면제 대상이 아님)
- ⑦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는 등록 후 등록증을 권리자에게 송부한다.

- ⑧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을 수신기관으로 하고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직무발명특허 등록 요청 공문을 시행한다.

〈서식〉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첨부서류〉

-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발명자 인적사항, 지분율, 계좌번호 등을 기재
- 등록증

- ⑨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국가직무발명특허 담당자**는 특허넷의 국유예측 목록을 통해 국가직무발명특허로 전환한다.

* 민간공동권리자가 특허등록 하였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국가직무발명특허에 해당하므로, 발명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전환한다.

- ⑩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국가직무발명특허 담당자**는 국가직무발명 특허 등록요청을 했던 발명기관에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서 등록결과를 통지한다.

〈첨부서류〉

- 등록원부

- ⑪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국가직무발명특허 담당자**는 등록요청공문, 결과 통지공문, 등록원부 및 등록증을 전자문서화 하여 특허넷에 업로드한다.
등록보상금은 추후에 작업하여 지급한다.



2

해외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 및 연차료 납부

제2장

- ① **발명자**는 발명 즉시 발명기관의 장에게 직무발명을 신고한다.

〈서식〉

- 직무발명신고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류〉

-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자의 직무, 직무발명의 성질, 발명 당시 발명자 지분 등 기재

- 직무발명의 요약서

: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

-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 여부 및 국가승계 여부를 판단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명의로 해외출원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 ④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을 수신기관으로 하고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 국가직무발명특허 관리 요청 공문을 시행한다.

* 서식은 국내와 동일하나, 국내 등록증이 아닌 해외 등록증을 첨부해야하고, 해외 특허권의 정보를 기재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함

- ⑤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국가직무발명특허 담당자**는 특허넷에 등록하고, 대리인 측으로 연차료를 관리하도록 지시한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으로 관리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 연차료는 특허청에서 부담한다. 민간공동 권리자가 있는 경우는 보유지분에 따라 분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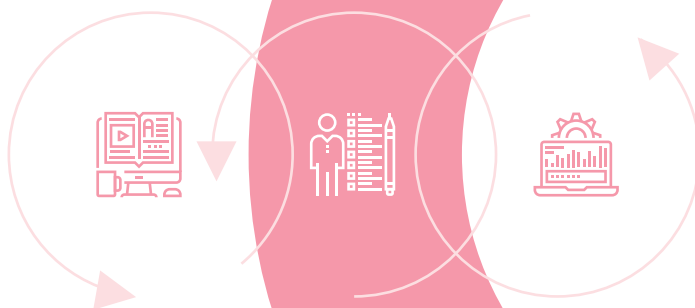
- ⑥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국가직무발명특허 담당자**는 관리요청을 했던 발명기관에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서 결과를 통지한다.

- ⑦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국가직무발명특허 담당자**는 등록요청공문 및 결과통지공문을 전자문서화 하여 특허넷에 업로드한다.





제3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처분절차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통상실시권 유상처분 19
2.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통상실시권 무상처분 21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전용실시권 유상처분 22





제3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처분절차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통상실시권 유상처분

- ① **계약신청자**는 국가직무발명특허목록을 조회하여 계약을 신청할 특허를 찾고 특허등록공보를 확인한다. 만약 대한민국 외의 권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라면 공동권리자에게 실시권 계약 동의를 사전에 문의한 후 계약을 신청해야한다. 공동권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하다.
 - 공동권리자 동의서는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까지 필요
- ② **계약신청자**는 수탁기관 방문, 우편 및 온라인의 방법으로 계약을 신청한다.
 - 수의계약신청서, 실시료견적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
 - 실시권 실시범위(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등) 기재
 - 실시료 견적내용(예상판매수량, 예상판매단가, 점유율 등) 기재
 - ▶ 발명기관과 협의 후 작성
- ③ **수탁기관**은 계약신청을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 공동권리자 유무 확인
 - 실시권 실시범위 및 실시료 견적내용 확인
 - 사업계획서내용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확인 (법인 인감증명서)
- ④ **수탁기관**은 발명기관에 의견을 문의한다.
 - 판매단가·점유율 및 산정근거
 - 발명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공동권리자의 자기실시인 경우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특별약정’ 유무
 - ▶ 자기실시는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 없이 실시가능(특허법 제99조)
- ⑤ **발명기관**에서 견적서에 대해 의견을 회신한다.



- ⑥ **수탁기관**은 발명기관 측 의견과 계약자 측 실시료견적서를 비교한다. 불일치 하는 경우, 발명기관과 재협의하여 새로 제출할 것을 계약신청자에게 요청 한다. 일치하게 될 때까지 재협의를 필요하다.
- ⑦ 일치한다면, **수탁기관**은 계약신청자에게 계약내용동의 요청을 한다.
 - 실시료 견적서 내용, 표준계약서 내용, 특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⑧ **실시권자**는 계약내용과 표준계약서를 확인 후 계약동의를 한다.
- ⑨ **수탁기관**은 계약서를 작성한다.
 - 기안문 작성(내부결재, 발명기관통보, 공동권리자 통보)
- ⑩ **수탁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송부한다.
 - 발명기관 및 특허청용 : 전자문서 송부
 - 공동권리자용, 계약자용
- ⑪ **수탁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후 실시권자에게 정산서를 제출받고, 특허청에 제출한다. (사후납부 계약 건인 경우)
 - 선납 계약은 계약체결 당시에 실시료를 납부한다.
- ⑫ **특허청**은 실시료 고지서를 발급하여 수탁기관을 통해 실시권자에게 전달한다. 실시권자가 납부하면 납부완료 처리를 하고, 처분보상금과 기여보상금은 추후에 작업하여 지급한다.

〈 ‘출원 중 직무발명’의 처분 절차〉

(국가직무발명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 단계)

- ① 계약신청자와 발명기관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결과는 특허청(아이디어경제 혁신팀)에 송부한다.
 - 계약서 사본, 출원 중 직무발명의 내용 등의 서류 송부
- ② 특허청(아이디어경제혁신팀)은 수의계약내용을 특허넷에 입력한다.
- ③ **실시료 징수 및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발명기관이 담당한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통상실시권 무상처분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무상실시조건〉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등록 후 3년 이상 미실시된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활용 촉진을 위해,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① **계약신청자**는 무상실시 대상인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조회한다. 이 때, 공동 권리자가 있는 특허라면 공동권리자에게 실시권 계약 동의를 먼저 문의한다. 공동권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하다.
- 공동권리자 동의서는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까지 필요
- ② **계약신청자**는 수탁기관 방문, 우편 및 온라인의 방법으로 계약을 신청한다.
- 〈민간인〉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무상실시 신청서, 무상실시 사유서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국가기관〉
- 무상실시 승인신청서, 무상실시 사유서
 - 사업계획서,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및 국가기관)
- ③ **수탁기관**은 발명기관에 의견을 묻고, **발명기관**은 의견을 회신한다.
- ④ **수탁기관**은 계약신청자에게 계약내용 동의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다.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전용실시권 유상처분

- ① **계약신청자**는 국가직무발명특허목록 중 전용실시를 원하는 특허를 찾아 수탁기관으로 사전 수요신청을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접수된 신청들에 대해 발명기관 의견을 문의한다. (분기별로)
- ③ **수탁기관**은 발명기관으로부터 의견 회신을 받은 후, 경쟁입찰 수행을 준비하여 특허청에 승인을 요청하고, 특허청은 검토 후 승인한다.
 - ▶ 제출서류 : 발명기관 전용실시 신청서, 입찰공고문 등
- ④ **수탁기관**은 전자조달입찰시스템(온비드)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공고한다.
- ⑤ **입찰자**는 입찰내용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한다.
 - ▶ 입찰 전 사업계획서를 수탁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 개찰 및 유효한 상위 2개의 입찰 건에 대하여 발명기관에게 낙찰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한다.
 - 발명기관은 입찰금액과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한 제안서를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여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 ⑥ **수탁기관**은 낙찰자와 계약 체결 및 계약서를 송부한다.
 - 발명기관 및 특허청용 : 전자문서 송부
 - 계약자용 : 계약서 원본 및 실시료 납부 고지서(특허청에 발급요청) 발송
 - ▶ 전용실시권자는 계약 체결 시 최소실시료(300만원 이상)를 납부해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정산 실시료에서 최소실시료를 제외하고 납부한다.
- ⑦ **낙찰자**는 전용실시권 등록을 진행한다. (처리부서: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



〈경쟁입찰을 대신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최소실시료(300만원 이상) 규정은 적용됨
-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 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공공기관에 필요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매각〉

- ▶ 법령 개정으로 통상실시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전용실시 또는 매각 등의 처분방식을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음
- ▶ 다만, 매각의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권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계약 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만약 착오 등의 이유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고 누구나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됨





제4장



국가직무발명보상금 및 사후관리

1. 보상금 종류	27
2. 보상금액	27
3. 보상금 지급시기	27
4.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처분보상금 지급방법	28
5.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실시계약 사후관리 절차	29





제4장

국가직무발명보상금 및 사후관리

1

보상금 종류

- 가. 등록보상금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 되었을 때 발명자에게 지급
- 나. 처분보상금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했을 때 발명자에게 지급
- 다. 기여보상금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했을 때 수탁기관에 지급

2

보상금액

- 가. 등록보상금 : 특허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디자인 20만원 (1회 지급)
- 나. 처분보상금 : 유상처분 수입금의 50% (처분 시마다 지급)
- 다. 기여보상금 : 유상처분 수입금의 15% (처분 시마다 지급)

3

보상금 지급시기

가. 지급가능시기

-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소멸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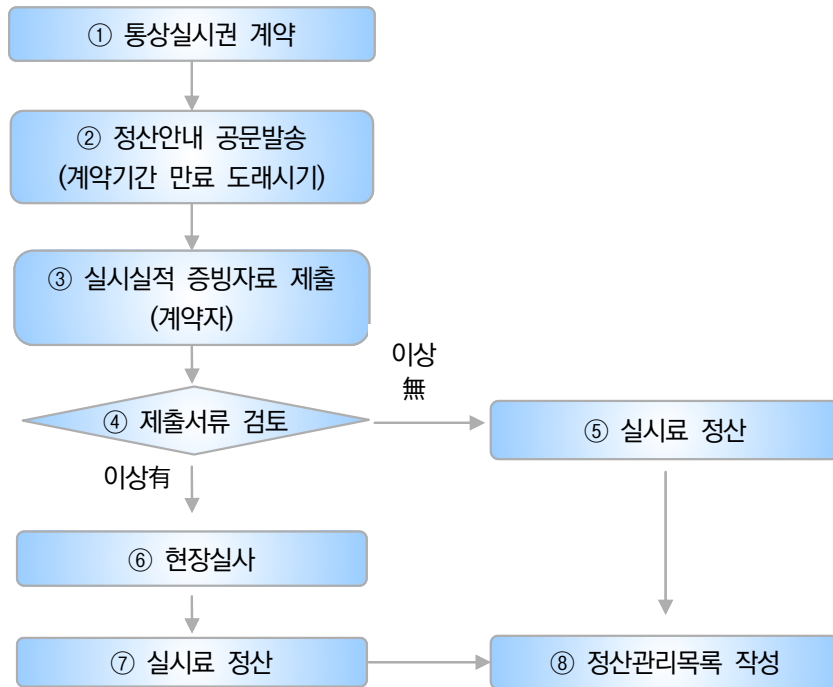
나. 실무행정처리

- 등록보상금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된 연도의 다음연도
- 처분보상금, 기여보상금 : 유상처분 수입금이 수납된 연도의 다음연도

4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처분보상금 지급방법

- ▶ 발명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전체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
단,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가 승계 당시의 발명자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
- ▶ 보상금 지급대상인 발명자에는 국가공무원 등만 해당(민간인에겐 미지급)
- ▶ 발명자가 퇴직 및 사망하였더라도 발명 당시 기준으로 공무원 등이었다면 지급
- ▶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
- ▶ 민간과의 공동권리를 처분하여 실시료를 국가지분만큼만 수납하였을 경우, 민간 발명자 지분을 제외한 공무원 등 발명자 지분을 100%로 환산한 후 처분수입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별로 나누어 지급
 - 공무원 등 발명자 환산 지분 = 발명자 지분 × 100 / 대한민국 지분
- ▶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 보상금의 반환] : 원칙적으로는 미 반환.
다만, 발명을 한 자가 아니거나 그 승계인이 아닌 경우, 공동권리자가 있음에도 단독출원 한 경우, 또는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이 재직 중 특허를 받은 사유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전용실시권 계약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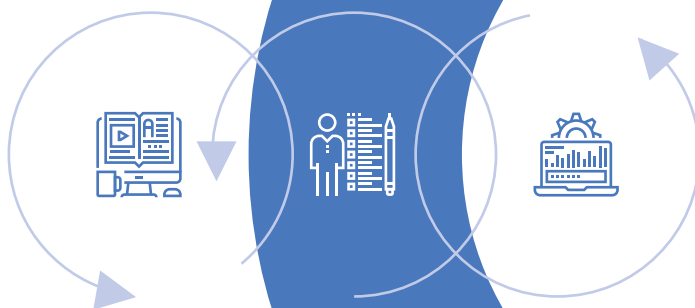
- ▶ 전용실시권자는 실시료의 일부로서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최소실시료’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 ▶ 추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로는 정산된 실시료에서 최소실시료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 2025





제5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서식

1. [직무발명 신고] 관련 서류	33
2. [국가직무발명특허 등록] 관련 서류	36
3. [국가직무발명특허 처분] 관련 서식	40
4. 통상실시권 계약서(유상, 무상)	48
5. 민간과 공동연구 수행 시 계약서	66



제5장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서식

1

[직무발명 신고] 관련 서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직무발명신고서

접수일			
발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현재)	소속(발명 당시)	
	직급·직위(현재)	직급·직위(발명 당시)	
직무발명	종류		
	명칭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제2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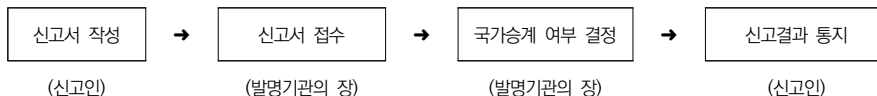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발명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 다음 페이지 양식 참고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작성 시 주의 사항

1. 국가공무원 등과 민간인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민간인은 “직무발명신고서”의 발명자란에는 기재하지 않으나, 특허 출원서 발명자란에는 기재하여야 함
2. 민간인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발명자란에는 민간인을 기재하되, 출원은 국가 단독명의로 출원함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 소속기관의 임무 :
 -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당해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 기재
- 발명자의 직무
 - ※ 소속기관에서의 당해 발명자의 직무내용 기재
- 발명의 성질
 - ※ 당해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 기재
(예시) “본 발명은 0000년 ~ 〇〇연구사업 수행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 ※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 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 발명자별 기여율
 - 발명자 기여율
 - ※ 발명자의 성명 및 기여율 기재
 - 공동출원자
 -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을 기재

본 발명은 직무발명이므로 국가(발명기관)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

년 월 일

발명의 명칭		
발명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단, 공동출원자는 국가(발명기관)에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직무발명의 요약서

【요약】

【대표도】

【색인어】

제5장

국가 직무발명특허권
관련
서식

2

[국가직무발명특허 등록] 관련 서류

수신 특허청장(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

※ 공동권리자가 없고 국가의 단독 출원 건인 경우

제목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의 등록요청(10-0000-00000000 ('출원번호'))

※ 민간 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 (설정등록을 완료한 후에 요청)

제목2)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의 등록요청(10-00000000-00-00 ('등록번호'))

‘발명기관명’ 소속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으로 등록을 요청합니다.

1. 출원번호(단독출원인 경우) or 등록번호(민간 공동권리인 경우):

2. 발명의 명칭(특허) or 고안의 명칭(실용신안) or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디자인):

3. 발명자(특허) or 고안자(실용신안) or 창작자(디자인): “대표발명자 외 0명”으로 기재 가능

(※ 민간 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 4. 추가)

(4. 공동권리자(지분율): ○○대학교 산학협력단(30%), ×× 주식회사(20%))

붙임 1. 등록요청서 1부.

2.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1부.

3. 등록결정서(단독출원인 경우) or 등록증(민간 공동권리인 경우) 1부.

4.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끝.

⇒ 다음 페이지 양식 참고

발명기관장

직인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서식

접수일					
발 명 자 ※ 여러 명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모두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111111-1***** ※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비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은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생략		
	주소				
	소속(현재)		소속(발명 당시)		
	직급·직위(현재)		직급·직위(발명 당시)		
직무발명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 ※ (출원번호(단독출원인 경우)) or (등록번호(민간 공동권리인 경우))				
	명칭 ※ (발명의 명칭(특허) or 고안의 명칭(실용신안) or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디자인))				

이
예
는

※ 직인본으로 제출 (인)

첨부서류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1부 2. 특허결정서·실용신안등록결정서·디자인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1부 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

graph LR
    A[요청서 작성  
(발명기관의 장)] --> B[요청서 접수  
(특허청장)]
    B --> C[등록과에 등록 요청  
(특허청장)]
    C --> D[등록결과 통지  
(발명기관의 장)]

```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 출원번호(단독출원인 경우) or 등록번호(민간 공동권리인 경우):
- 발명의 명칭(특허) or 고안의 명칭(실용신안) or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디자인):
- 발명자(특허) or 고안자(실용신안) or 창작자(디자인)

성 명	발 명 당 시 소 속	발 명 당 시 직 급

※ 여러 명인 경우 모두 기재하고, 반드시 발명 당시의 신분으로 기재

- ① 발명자(특허) or 고안자(실용신안) or 창작자(디자인)와 소속기관의 업무내용
발명자(특허) or 고안자(실용신안) or 창작자(디자인) :
소속기관 :

- ② 발명(특허) or 고안(실용신안) or 창작(디자인)의 과정 :

- ③ 발명(특허) or 고안(실용신안) or 창작(디자인)의 간단한 내용

따라서 위 발명(특허) or 고안(실용신안) or 창작(디자인)은 발명자(특허) or 고안자(실용신안) or 창작자(디자인)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 명 기 관 장 (직인)

※ 직인본으로 제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출원번호(단독출원인 경우) or 등록번호(민간 공동권리인 경우):
- 발명의 명칭(특허) or 고안의 명칭(실용신안) or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디자인):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예시) ※ 기재에 오류 없도록 반드시 검토바랍니다. (지급 어려울 수 있음)

발명자 성명	①주민등록 번호	②발명당시			기여율 (%)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비 고
		소속	신분	직급			
김가나	111111 -1*****	○○부	공무원	과장	5%	-	③보상금포기
이다라	222222 -2234567	○○부	공무원	연구사	25%	XXX-XX-XXXXX (aa은행, 이다라)	
박만바	333333 -1234567	○○부	④비공무원	연구원	25%	XXX-XX-XXXXX (bb은행, 강사아)	⑤사망
존 스미스	222222 -5*****	○○부	비공무원	연구원	20%	XXX-XX-XXXXX (cc은행, ⑥John Smith)	
유자차	444444 -2*****	○○ 주식회사	민간인	연구원	25%	-	
기여율 합계					⑦100%		

- (1)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기재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마스킹 처리한다.
- (2) 반드시 발명 당시의 신분으로 기재한다.
- (3) 보상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기여율은 0%로 적지 않는다. 기여율이 0%인 발명자가 없도록 주의한다.
- (4) 국가기관 소속 비공무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이므로, '민간인'이 아니라 '비공무원'으로 기재한다.
- (5)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 계좌를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 (6) 외국인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예금주 명이 영문성명으로 되어있는 경우 생략 없이 영문 그대로 기재한다.
- (7) 기여율의 총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 월 ○ 일

발 명 기 관 장 (직인)

※ 직인본으로 제출

3 [국가직무발명특허 처분] 관련 서식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수익계약신청서

접수일		
신 청 인 (신청기관)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무발명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제 호	
	명칭	
	처분의 종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건적 금액	
	실시의 범위 기간: 지역: 내용:	
	수의계약의 근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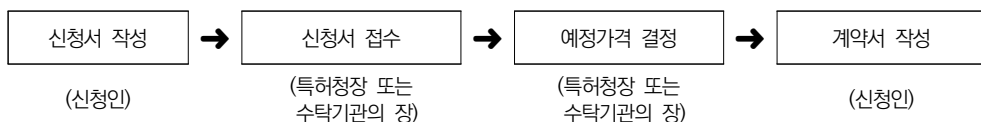
신청인(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1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사업계획서

1.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e-mail		/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화 추진일정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위 기술분야의 사업경험 및 기술 축적도					

2. 국가직무발명특허 사업화 자금수요 예측 및 조달 계획

--

실시료견적서

권리의 표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
발명의 명칭		
실시료의 견적금액	금	원
● 실시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예시)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개 - 제품의 단가 / 단위 : 원/개 - 점유율 : % - 기본율 : % - 실시료 산출금액 = 개 × 원/개 × % × % = 원		
※ 기재 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		
20 년 ○월 ○일 ○○○ 대표이사 ○ ○ ○ (인)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무상실시 승인신청서

접수일			
신 청 인 (신청기관)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국유 특허권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제 호		
	발명(고안, 창작)의 명칭		
	무상실시의 목적		
	무상실시의 범위		
	기간: 지역: 내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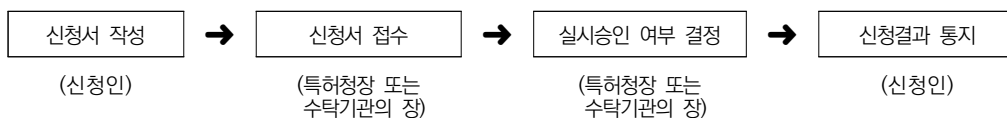
신청인(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권 정산서					
제 출 인	① 명 칭 (대표자)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권리의표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계약내용	실시기간	. . . ~ . . . [0년간]			
	총 판매예정수량	제품판매단가	점유율(%) [A]	기본율(%) [B]	지분율(%) [C]
⑦ 실시실적	실시수량 [D]	제품단가 [E]		최종 실시료 [F]	
	* 최종 실시료[F] = 실시수량(D)×판매단가(E)×점유율(A)×기본율(B)×지분율(C)				
⑧ 정산결과	최종 실시료 [F]	기 납부액 [G]		납부 실시료 [H]	
	* 기 납부액 [G] : 선금금, 분납 등의 형태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납부한 금액의 합계 * 납부 실시료 [H] : 최종 실시료(F) - 기 납부액(G),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재				
실시계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 회계장부, 원장, 거래명세서 중 1개 서류 - 세금계산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과세서류 중 1개 서류 ※ 실시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 ☞ 제출된 실시실적자료의 신고 성실도를 참고하여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제출방법 : 공문서 작성 후 팩스, 우편제출 또는 인터넷 제출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미 실시 사유서			
제 출 인	① 명 칭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권리의표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미 실시 사유			
실시계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 제출방법 : 공문서 작성 후 팩스, 우편제출 또는 인터넷 제출			





전용실시 ()차년도 사업진행현황 보고서 서식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종업원 수(명)
계약특허	등록번호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 제 호		
	발명의 명칭			
	실시기간	. . . ~ . . . [0년간]		
사업목표	○ 사업계획서에 목표로 한 제품 생산 및 유통, 기대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추진현황	○ 사업목표 달성 현황			
문 제 점	○ 후속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			
향후계획	○ 향후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실시계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www.kipo.go.kr 47

4

통상실시권 계약서(유상, 무상)

〈유상처분에 따른 계약 표준서식〉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과 (주)0000(대표이사(자) : 000, 이하 “실시권자”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통상실시권 허락(이하 “실시”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허락)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이하 “계약특허”라 한다)의 실시를 실시권자에게 허락한다.

- 특허번호 : 특허 등록 제10-00000000호
- 발명의 명칭 :

제2조(실시권의 범위 등) 이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간 : 2000. 00. 00. ~ 2000. 00. 00. (0년간)
2. 예정 실시료 : 금 원
 - 총판매예정수량 : 개
 - 제품판매단가 : 원/개
 - 점유율 %, 기본율 3%, 국가지분율 %
3. 실시범위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 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4. 실시제품명 또는 기술적용지역 :

제3조(제3자에 대한 허여)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이 계약의 체결 후 실시권자에게 허여한 실시권을 실시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허여할 수 있다.

제4조(실시권의 등록) 실시권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 실시권자의 비용으로 통상 실시권의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특허청은 실시권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료의 납부) ① 실시권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 1]에 따라 매출실적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실시권 정산서를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출된 정산서를 바탕으로 아래 계산 방법에 의하여 실시료를 산정하여 실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실시료 = 단위제품의 가격 × 실시수량 × 점유율 × 기본율 × 국가지분율

1. 단위제품의 가격 : 0,000원/제품 단위
2. 실 시 수 량 : 000 제품단위
3. 점 유 율 : 00%
4. 기 본 율 : 3%
5. 지 분 율 : 00%
6. 실 시 료 : 금000,000원

③ 실시권자는 본 통상실시에 대한 대가로서 아래와 같이 기술실시료를 특허청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가. 납부기간 :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나. 입 금 처 : 납부고지서에 명시한 지정계좌

④ 만약 실시권자가 위 기간 내에 실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연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만약 실시권자가 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6조 제4항 각 호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단, 실시권자가 실시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는 경우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3개월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납부 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실시료의 정산 등) ① 실시권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제2조의 실시권 허락에 대한 실시기간 동안 실시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미실시 사유서를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실시권자로부터 실시상황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원 또는 대리인 등을 파견하여 이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실시료 산정에 있어 명백한 착오가 발견될 경우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실시료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실시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산서를 제출 않거나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실적 자료 등을 축소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것이 밝혀질 경우,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실시권자에 대해서 국가직무발명특허(또는 출원 중 직무발명) 5년 이내 실시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7조(비밀보장) 실시권자는 계약기술에 관하여 계약 종료 후 5년까지 발명자(기관)로부터 습득한 노하우,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 타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면책) ①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실시권자의 계약특허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권자의 제3자에 대한 실시료 지급 등 실시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3자가 계약특허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실시권자는 그 사실을 특허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계약특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재계약) ① 실시권자는 제2조의 실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실시권자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술실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장된 재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전항의 무효사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재계약 실시시작일부부터 전항의 무효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실시권자는 계약특허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0조(특허권의 존속)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이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키기 위하여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법적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무효) ① 계약특허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등으로 인하여 실시권자가 더 이상 계약특허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이 사실을 실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계약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실시권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실시시작일부터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권의 이전 등) ① 특허법 제10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권의 이전, 기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권자 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행할 수 없다.

1.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재실시권의 허락
3.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업주체의 변경

제13조(특허의 표시) ① 실시권자는 이 특허권의 실시에 의한 제품에 당해 특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특허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발명기관의 명칭을 병기할 수 없다. 다만, 발명기관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실시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청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이 특허권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계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을 특허청이 인지하는 경우
 4. 실시권자가 조업중단 등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시장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특허청이 판단하는 경우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라 실시시작일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특허청 제출하고,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실시권자는 계약특허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5조(서류의 제출) 제5조에 의한 실시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권자는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생산 수량에 관한 관계기관(관할 세무서등)의 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중요사항의 변경) 실시권자가 본 계약체결 후 사업장의 주소, 대표이사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권자가 위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17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법,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며 효력발생 이전에 계약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단, 통상실시계약의 신청 및 실시권의 범위 등을 협의하는 기간 동안 계약특허를 선(先)실시한 것이 발견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실시료를 실시료 정산 시 추가하여 납부한다.

② 본 계약은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과 실시권자 간 통상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전에 특허청과 실시권자 간 작성된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 이후 본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서식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과 실시권자는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과 실시권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 (인)

실시권자 : ○○○도 ○○군 ○○면 ○○로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식회사 ○○○○○○ 대 표 ○ ○ ○ (인)

〈등록 후 미실시를 이유로 한 무상처분에 따른 계약 표준서식〉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무상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갑) 과 ○○○○(대표이사 ○○○○,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통상실시권 허락(이하 “실시”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허락) 갑은 다음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실시를 을에게 허락한다.

특허 번호 : 특허 등록 제 ○○○○○ 호

발명의 명칭 :

제2조(실시권의 범위) 이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간 : 20 . . . ~ 20 . . . (년간)
2. 실시수량 : 추후 결정
3. 실시범위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 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제3조(실시료) 실시료는 실시기간동안(년간) 무상으로 한다.

제4조(실시권의 등록) 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 을의 비용으로 통상실시권의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특허권의 존속) 갑은 이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키기 위하여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법적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무효) 이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권의 이전 등) ① 특허법 제10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권의 이전, 기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을 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행할 수 없다.

1.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재실시권의 허락
3.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업주체의 변경

제8조(특허의 표시) ① 을은 이 특허권의 실시에 의한 제품에 당해 특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특허의 표시를 함에 있어 발명기관의 명칭을 병기할 수 없다. 다만, 발명기관의 별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실시상황조사) 갑은 필요한 경우 을로부터 실시상황 기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실시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권의 침해) ① 을은 이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갑은 전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이 특허권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계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을 갑이 인지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재실시) ① 을은 제2조의 무상실시기간 만료 후 재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재실시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에게 재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재실시는 유상으로 하며, 재실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시료는 다음 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 실시료 = 단위제품의 가격×허락수량×점유율×기본율

1. 단위제품의 가격 : 추후 결정
2. 허 락 수 량 : 추후 결정
3. 점 유 율 : 추후 결정
4. 기 본 율 : 3%
5. 실 시 료 : 추후 결정

제13조(계약기간 만료후 실시) ① 을은 제12조에 의한 재실시계약의 체결없이 제2조 제1호의 무상 실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권의 실시(특허 제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 등)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기간 중에 이미 생산된 물건에 대하여는 갑의 허락을 얻은 후 판매·처분할 수 있다.

② 을이 전항 단서규정에 의한 갑의 허락을 받으려면 잔여물건의 품명, 수량, 보관장소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실시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의한 을의 허락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허락여부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3항의 허락을 함에 있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법,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갑과 을은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갑이 발명기관에 해당계약서를 공문으로 송부한다.

20 년 ○ 월 ○ 일

갑 :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 ○ ○ ○ (인)

을 : ○○도 ○○군 ○○면 ○○로 ○○

주식회사 ○ ○ ○ 대표이사 ○ ○ ○ (인)



〈등록 후 전용실시 유상처분에 따른 계약 표준서식〉

국가직무발명특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0000(대표자 000,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전용실시권(이하 “실시권”이라 한다) 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설정) 갑은 다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이하 “계약특허”라 한다)에 대하여 을에게 실시권을 설정한다.

1. 특허번호 : 특허 제10-00000000호
2. 발명의 명칭 :

제2조(실시권의 범위 등) 본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간 : 2000. 00. 00. ~ 2000. 00. 00. (0년간)
2. 실시범위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 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제3조(신의성실의무) ① 계약특허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특허 기술의 사업화로 제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을은 계약 체결 전 계약특허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일정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한 실시기간 내에 계약특허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권의 등록) 을은 계약체결 이후 을의 비용으로 실시권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진행현황 제출 및 평가) ① 을은 매년 1월 30일까지 전년도 사업진행 현황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사업 진행현황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여 사업 추진경과,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계획(제4조의 사업 계획서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조치사항 포함)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증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② 갑은 을의 사업진행현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특허의 실시가능성
2. 제3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

③ 갑은 사업진행현황 평가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진행현황 보고서는 전년도 실시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계약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실시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실시료의 납부) ① 실시료는 계약특허의 실시로 인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 이후 매년 계약특허의 실시실적 정산을 통해, 계약 시 납부한 최소실시료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다.

② 을은 매년 1월 30일까지 갑에게 전년도 실시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산서를 제출한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실시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한다.

③ 갑은 제출된 정산서를 바탕으로 연간 실시료를 산정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실시료가 최소실시료보다 적을 경우 해당 연도의 실시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 실시료 = 총판매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 다만 예정가격 산정 시, 통상실시와의 구별을 위해 점유율×기본율이 최소 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④ 을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연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실시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갑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갑은 3개월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납부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⑤ 실시료 정산에 있어 명백한 착오가 발견될 경우 갑은 실시료의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매출액의 기준) ① 제7조 제1항의 매출액은 계약특허 기술을 사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계약특허 기술이 다른 기술과 결합되어 사용된 경우, 제품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 계약특허 기술이 사용된 경우 등을 포함한다.

② 전항의 매출액은 실시기간 발생한 세금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을 의미한다.

제9조(실시상황 조사 및 서류의 제출) 갑은 사업진행현황 평가 및 기타 정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사업현장에 방문하여 이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장) ① 을은 계약특허와 관련된 기술 또는 노하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③ 동 조의 비밀보장의무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특허의 표시 등) ① 을은 계약특허 실시에 의한 제품에 당해 특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특허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발명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제공받은 기술자료,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갑의 동의 없이 판매추진, 쟁송 등의 자료로 사용하거나 상기의 목적으로 갑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면책) 갑은 계약특허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특허의 실시에 의하여 을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실시료 지급을 포함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특허권의 침해) ① 을은 제3자가 계약특허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본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특허권의 존속) 갑은 계약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키기 위하여 무효심판 청구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특허권의 무효) ① 계약특허의 무효로 인하여 더 이상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이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계약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을은 이미 납부한 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실시권의 이전 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행할 수 없다.
1. 계약특허 실시에 관한 사업의 양도 및 실시권의 이전
2.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3. 재실시권의 허여(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의 부여)
4.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업주체의 변경
② 제1항에 의하여 실시권의 이전, 기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을 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불가항력)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개량발명) ① 을이 실시과정에서 계약 특허기술을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하는 발명(이하 “개량발명”이라 한다)을 하거나 개량발명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개량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갑은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체결이 허위표시, 기타 사실과 다른 내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드러나는 경우
2. 본 계약의 각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을이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실적 자료 등을 축소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기타 계약특허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복리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갑은 제6조의 사업진행현황 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계약특허가 실시될 가능성이 명백하게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을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게을리 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을의 사업진행현황이 사업계획서와 상당부분 불일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 제3항의 보완 또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을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 또는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③ 갑은 제2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평가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 사항에 대하여 을과 협의할 수 있다.

④ 갑이 실시권의 등록절차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는 등 본 실시권의 설정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실시를 방해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이미 납부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실시행위에 의한 산출물을 을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 실시권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을은 그 산출물에 대응하는 실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0조(재계약) ① 을이 제2조의 실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6조 제1항의 사업진행현황 보고서 제출과 함께 갑에게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권자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실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장된 재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전항 단서에 따라 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전항의 무효사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라 재계약 실시 시작일로부터 전항의 무효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계약기간 연장사유의 타당성, 사업진행현황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특허를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 을이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이사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이 이러한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22조(관계법령의 적용 등)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법, 국가계약법,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습 및 사회통념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부적법한 경우에도 그 조항의 무효 또는 부적법으로 인하여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쌍방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제23조(국외 수출 및 실시) ① 을이 국내에서 계약특허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 수출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계약특허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별도의 실시계약을 체결한다.



제324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갑과 을의 전용실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전에 갑과 을 간의 작성된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② 본 계약의 변경은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특허청장과 실시권자는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특허청장(또는 수탁기관의 장) ○○○ (인)

(주소) ○○광역시 ○○구 ○○로 ○○

실시권자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주소) ○○도 ○○군 ○○면 ○○로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전용실시 정산서						
제 출 인	① 명 칭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④ 권리의 표시		특허 제10-0000000호				
⑤ 발명의 명칭						
⑥ 실시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⑦ 실시실적	실품목	실시수량 [A]	판매 단가 [B]	점유율 [C]	기본율 [D]	납부 실시료(원) [E]
					3%	
	납부 실시료[E] = 실시수량(A)×판매단가(B)×점유율(C)×기본율(D)					
「국가직무발명특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인 (인)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 제출방법 : 작성 후 팩스, 우편제출 또는 인터넷 제출						



〈별지 2〉

전용실시 ()차년도 사업진행현황 보고서 서식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종업원 수(명)
계약특허	등록번호	특허 제10-0000000호		
	발명의 명칭			
	실시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사업목표	○ 사업계획서에 목표로 한 제품 생산 및 유통, 기대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추진현황	○ 사업목표 달성 현황			
문 제 점	○ 후속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			
향후계획	○ 향후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국가직무발명특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5

민간과 공동연구 수행 시 계약서

특허권의 공동출원에 관한 계약서

○○○ (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이
년 월 일 체결한 공동연구협약서 따라 공동 개발한 “ ”에 대하여
공동발명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동출원, 공유지분 및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특허권의 공유 및 지분) “국가기관”과 “수행기관”은 다음 발명(이하 “본
발명”이라 한다.)에 관계되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공유한다.

- 발명의 명칭 :
- 발명의 내용 :
- 지분 : 국가기관 %, 수행기관 %

제2조(특허료 등의 납부) ① 본 발명의 공동 출원 및 등록 등에 따른 변리사의
수수료는 “국가기관”과 “수행기관”의 지분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국가기관”과
“수행기관”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특허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에게만 적용되는 출원료 및 특허
료(연차료를 포함한다. 이하 ‘특허료’라 한다)는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제3조(특허권의 권리존속 유지의무 등) ① “수행기관”은 설정등록된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권리존속 유지의무를 가진다.

② “수행기관”은 특허법 제79조·제81조·제8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수행기관”이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 납부 기간
까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료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 등) ① “수행기관”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 납부기간 이내에 “국가기관”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국가기관”에게 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를 통한 권리의 말소



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행기관”은 “국가기관”의 말소등록에 따른 서류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공유특허권의 지분 포기를 통한 권리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유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소멸 또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공유자의 실시·실시료) ① “국가기관” 또는 “수행기관”은 “국가기관”과 “수행기관” 이외의 자에 대하여 본 발명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수행기관”이 출원 이후 본 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권리의 처분을 관장하는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표에 의거하여 산정된 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실시료 : 총 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1. 총 판매수량 또는 총 판매예정수량 : 실시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수량 또는 판매 예정 수량의 합계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의 평균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결과가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
 5. 지분율 : 계약서 상 갑의 지분율

③ 제1항의 실시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국가기관”과 “수행기관”은 제3자 등에 의한 공유특허권의 침해시 침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응하여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 설정 후의 실시) ① 특허권의 설정(특허등록) 후의 실시 관계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수행기관”은 특허 등록 후 매년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료를 부담하며, 만약 “수행기관”이 특허권 유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기관”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국가직무발명특허로 온전히 귀속되도록 협조한다.

제7조(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기술에 대한 일체의 자료, 아이디어(Idea) 및 본 기술개발 중에 지득한 양 당사자의 기술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본 협약으로 정하는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수행기관” 이 상기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특허출원 및 특허 실시에 불성실한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국가기관”과 “수행기관”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국가기관”, “수행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국가기관”은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 사실을 통지한다.

년 월 일

국가기관 : (인)

수행기관 : (인)



부 록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Q&A	71
2.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제도 해설	81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법령 내용	100
4. 2024년 주요개정내용	156
5. 직무발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61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Q&A

Q

등록원부상 등록권리자가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모두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인지? 국가기관의 특허와의 차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국가기관의 특허
개념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상 발명에 대하여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용역, 권리이전, 특허권 매입 등으로 취득한 국가명의로의 특허권
등록원부 등록 권리자란 표시 형태	대한민국 (관리청 : 특허청장, 승계청 : 발명기관의 장)	대한민국(국가기관의 장)
처분·관리 담당	특허청	해당 기관

Q

국가기관이 단독 출원한 국가직무발명특허의 경우, 등록방법?

- ▶ <출원 → 심사 · 등록가능여부결정 → 국가직무발명특허로 등록>의 단계를 통해 국가직무발명특허로 등록됩니다.
- ▶ 국가는 설정등록료 납부 면제 대상이므로, 따로 설정등록료 납부 없이 등록요청서식들을 준비하여 국가직무발명특허 등록을 요청합니다.
(※ 설정등록료 납부기한(9개월) 이내 등록완료 필수! 연장 불가)

Q

국가기관과 민간인이 공동 출원한 국가직무발명특허의 경우, 등록 방법?

- ▶ <출원 → 심사 · 등록가능여부결정 → 특허등록(설정등록료 납부) → 국가직무발명특허로 등록>의 단계를 통해 국가직무발명특허로 등록됩니다.
- ▶ 출원 후 심사를 거쳐 ‘특허결정서’를 수령하면, 민간인이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를 등록합니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증을 송부하며, 국가기관은 민간인으로부터 특허증을 전달받아 등록요청서식들과 함께 첨부하여 국가직무발명특허 등록을 요청합니다. (온나라 문서 시스템 이용 / 수신기관: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

Q

국가는 출원 및 등록 관련 수수료 및 특허료 전액을 면제받고, 민간인인 공동출원인·권리자가 전액을 납부해야하는 이유는?

(관련 규정 : 특허법 제79조, 제80조, 제8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8항)

- ▶ 특허료 납부의무의 성격은 공법상 의무입니다. 특허법이 국가에게 납부의무를 면제시킨 것은 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인데, 납부 면제의 효과를 확장하려는 의도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특허료는 권리의 독점배타적인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측면이 강하며, 공동권리자 중 일부가 국가라는 우연한 사실이 개인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특허료의 이러한 성질과도 맞지 않습니다. (참고: 해외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은 국가도 함께 납부)
- ▶ 따라서 개인은 특허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보유한 지분권 전부를 말소합니다. 다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에 따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국가는 등록료 등의 면제 혜택이 있는데, 왜 설정등록료 납부기한 내 등록요청을 하여야만 하는지?

- ▶▶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 제1항).
설정등록에 특허권 발생의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허결정과 함께, 특허료의 납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국가는 설정등록료의 납부 대신, 국가직무발명특허 등록요청을 통해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정등록료 납부기한인 9개월 이내 등록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Q

외국에 등록된 국가직무발명특허의 연차료 납부 주체는?

- ▶▶ 국가기관의 단독 권리의 경우, 해외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관리를 특허청에 요청한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은 특허청이 지불합니다.
- ▶▶ 국가기관과 민간인의 공동 권리의 경우, 해외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관리를 특허청에 요청한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은 특허청과 민간인이 소유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연차료를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Q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동 직무발명으로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동출원인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 규정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제2호)

- ▶▶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직무발명신고를 한 후에 두 기관 공동명의로 출원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출원료, 설정 등록료, 연차등록료 등의 50%를 감경 받게 됩니다.



Q

직제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등록원부에 직제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경 방법은?

- ▶▶ 국가기관 명칭변경의 경우 기등록건 또한 반영될 수 있도록 등록원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청 아이디어 경제혁신팀 국가직무발명특허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

발명자 누락 또는 발명자 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조치방법은?

- ▶▶ 착오로 출원 시 일부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때에는 특허여부 결정전까지 추가·정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

Q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개발한 기술을 사업에 도입하고자 하는데 신청방법은?

- ▶▶ 아직 권리등록 전이라면 해당 발명자가 소속된 기관에 실시계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등록 후부터는 특허청에서 해당 특허를 관리하므로, 발명기관이 아닌 특허청의 수탁기관 측으로 연락하여 실시계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국립대학교의 특허를 사업에 도입하고자 하는데 신청방법은?

- ▶▶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국가 공무원 등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술이전촉진법 제11조제1항)
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으로 계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특허출원을 하기 전, 업체 측의 기술이전 요청이 있어 기술이전 등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

- ▶▶ 특허출원 없이 기술이전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술이전 이후 해당업체가 먼저 특허출원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성과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특허출원 이후에 실시권 계약을 맺고 기술이전을 진행하여야 권리를 잃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없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계약을 신청하는 방법은?

- ▶▶ 발명의 권리등록 전, 즉 ‘출원 중 직무발명’ 상태에서의 실시계약을 신청 하려는 경우 해당 발명기관(발명자 소속기관)에 연락 바랍니다.
- ▶▶ 발명의 권리등록 후, 즉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상태에서의 실시계약은 아래의 분야별 기술거래기관(수탁기관)에 연락 바랍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 · 축산 분야]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 분야]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등 산림청 소속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수산 · 의료 및 기타 분야]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재활원, 질병관리청 등

Q

실시계약 진행 절차 및 대략적인 소요 기간은?

- ▶▶ 계약체결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수탁기관 담당자가 발명기관으로 계약 관련 의견문의 과정을 거칩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의견 회신까지 약 2~3주 소요되어 전체 진행은 최소 3~4주 소요됩니다. 만약 발명기관의 발명자와 제품의 단가, 점유율 등을 사전 협의를 해두면 발명기관의 빠른 의사결정으로 신속한 계약체결이 가능해집니다.

Q

실시료 산정 시의 '점유율'이란?

- ▶▶ 점유율이란,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 이용되는 비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3호)

Q

실시료 산정 시의 '기본율'이란?

- ▶▶ 기본율이란, 대상제품 매출액 중 시험연구비율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3%로 합니다. 다만,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4호)

Q

제품화 전이라 정확한 단가계산이 어려운데, 실시료견적서에 총판
매예정수량과 제품판매단가를 대략적으로 적어도 되는지?

- ▶▶ 발명기관과 실시업체가 총 판매예정수량, 제품판매단가, 점유율 등에 대해
협의하여 산정한 예상 실시료 견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점유율은 0%초과 100%이하여야 함)
사후납부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 실제 실시수량, 제품단가 등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제출하여 실제 실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Q

견적과 다르게 실적이 발생하여도 불이익은 없는지?
예를 들어 계약 견적보다 과소·과다 판매된 경우 혹은 제품화 실패
및 미판매된 경우에 실시료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 ▶▶ 계약기간 만료 후 작성한 정산서에 따라 실시료를 산정·납부하게 됩니다.
즉 견적서의 판매예정수량과 상관없이 실제 200대 제품을 판매했다면
실시수량은 200대가 될 것입니다. 제품화 실패 및 미판매의 경우에는
실시실적이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정산서를 대신하는 양식인 미실시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실시실적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정산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실시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1개의 단위제품에 대해 국가직무발명특허 4건의 실시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서를 하나만 작성해도 되는지?

- ▶▶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권리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시권의 범위 및 실시료 산정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되는데, 이에 따라 견적서 작성·제출 및 사후정산절차가 이루어집니다.

Q

공유권리인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실시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 ▶▶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99조 제4항)
민간인 공유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되며, 이때 동의서의 실시기간과 수익계약신청서의 실시기간은 동일해야 합니다.

Q

민간인과 공동권리인 경우, 실시료 수입금은 어떻게 배분하는지?

- ▶▶ 실시료의 경우는 실시료는 실시 신청인이 권리자의 지분에 따라 각각의 계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 ※ 민간과의 공동연구 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공동명의로 출원·등록할 경우에는 소유권 및 소유지분, 자기실시 할 경우의 실시조건, 연차료 미납 시 권리 귀속문제,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Q

특허청에서 지급하는 국가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발명자는?

- ▶▶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 시의 등록보상금과 유상처분 시의 처분보상금을 받는 발명자에는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발명자 및 비공무원발명자 (=“국가공무원 등”) > 모두가 해당됩니다.
(2021년 10월 21일 개정법령 시행되며 비공무원 발명자까지 확대)
- ▶▶ 국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발명자에게는 특허청에서 국가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특허청에서 국가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공문이 왔는데, 발명자 중 퇴직자 및 사망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 보상금 지급은 ‘발명 당시’의 신분이 기준입니다. 현재 퇴직하였어도 보상금 지급대상자이며, 사망하신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Q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국내 및 외국에서 모두 등록되었다면, 등록 보상금은 여러 번 지급되는지?

- ▶▶ 등록국가가 다르더라도 등록보상금을 여러 번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특허가 등록된 국가 수만큼 보상금이 지급되면 보상금 중복지급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특허청에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계산방법은?

▶ 처분수입금의 50%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 [국가의 단독권리인 경우]

- “국가공무원 등”에게 그 발명지분에 따라 보상금 지급
- 국가기관 소속이 아닌 발명자에게는 미지급

☞ [민간과의 공동권리인 경우]

- ▶ 민간인 공유자가 권리포기, 국가에 무상양도 등을 한 이후의 처분
 - 국가 승계 당시의 발명지분에 대해서만 지급
- ▶ 민간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료를 국가권리 지분만큼만 수납
 - 민간 권리지분을 제외한 국가권리 지분에 속하는 발명자 지분을 100%로 환산하여 각 발명자 환산지분대로 지급

권 리 자		발 명 자	
대한민국	민간인	공무원	민간인
○		○	
○		○	○
○	○	○	○

⇨ 환산지분이 필요한 경우

(환산지분 = 발명자 지분 × 100 / 대한민국 지분)

(사례)

- 총 실시료(국가+민간지분): 100만원 / 국가지분: 30%
- 국가공무원 등 발명자 2명의 발명지분이 각각 15%

- ① 국가 몫의 실시료수입 : 100만원 × 30% = 30만원
- ② 1의 50% : 15만원
- ③ 국가공무원 등 발명자의 지분을 100%로 환산
: 환산지분 = (15%×100)/30% = 50%
- ④ 국가공무원 등 발명자 2인은 각각 7만 5천원 수령

2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제도 해설

1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발명진흥법」 제10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국가직무발명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 조례를 따른다.

가. ‘국가공무원 등’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한 모든 국가공무원 및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국가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다. ‘국가의 업무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 업무범위를 기업 등 법인의 경우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된다. 따라서 발명을 한 국가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의 직제와 사무분장규칙에 정해진 업무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라. 『국가직무발명규정 및 시행규칙』의 적용제외

(1)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국가직무발명특허’가 아님

「발명진흥법」제10조 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 승계할 수 있고, 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술이전법 시행령」에서 특허권의 소유와 관리업무를 전담조직의 업무로 규정함에 따라 현재 국·공립대학교에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다.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3년 설치된 이래 직무발명의 승계, 특허 등의 출원·등록·이전 및 활용,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기술이전 및 활용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직무발명특허’가 아님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승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 별 보상조례를 정하고 있다.

발명자 결정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대한 창작행위(특허법 제2조)로, 직무발명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볼 것인지는 특허법 제2조 발명의 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정확한 발명자의 결정은 발명자에 대한 보상, 업적평가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발명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공동발명의 경우에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복잡할 수 있다.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는 당해 발명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자인지 단순한 협력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지 신분상 또는 직무상 위계를 이유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발명자에 기재하거나, 기여 실적이 미미한데도 지분비율을 높여주는 등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

- ❶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완성한 자
- ❷ 타인의 착상에 의거 연구를 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한 자
- ❸ 타인의 착상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부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 ❹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약간 불완전한 착상을 하고 타인에게 일반적인 지식의 조언 또는 지도를 얻어 발명을 완성한 자
- ❺ 타인의 발명에 힌트를 얻고 다시 그 발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을 한 자

■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❶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는 등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후원자, 위탁자)
- ❷ 희망조건만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착상을 제공하지 않은 자
- ❸ 타인이 제시한 착상 속에서 실용성이 있을 것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
- ❹ 당해 발명에 관하여 착상만 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자
- ❺ 발명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지시로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제시된 제도 혹은 실험 등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단순보조자)
- ❻ 단지, 일반 지식의 조언 또는 제시를 주기만 한 자

관리자의 발명자 해당 여부

■ 발명자에 해당하는 관리자

- ❶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게 그 발견 및 실현을 하게 한 자
- ❷ 팀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한 자
- ❸ 팀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 ❹ 소속 부서 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완성 시킨 자

■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자

- ❶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 ❷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 ❸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良 의 판단을 한 자

【판례】 공동발명자 여부

빠징꼬 기계에 마작의 오름수를 짜넣고 마작패의 모양을 가로, 세로로 규칙적으로 배열한 표시부의 표시를 낙하하는 타구로 하게 하고, 일정한 오름수를 표시 시키려는 착상을 한 자(A)와 이 착상을 알려주어 A와 공동으로 구체화하여 완성 시킨 자(B)는 공동발명자이다.

【일본 동경고판 1976. 4. 27】

【판례】 공동발명자 여부

발명자의 지시에 의하여 발명에 관한 장치의 작성(부품의 조립을 통한 발명)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일본 동경지판 1979. 4. 16】



직무발명 관련, 발명자 게재권 및 기여율

■ 발명자 게재권

발명자의 인격권으로서의 발명자 게재권, 즉 자기가 한 발명에 대해 특허 중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서 게재될 권리를 갖는다. 기재누락 및 오기를 한 때에는 추가·정정이 허용된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 발명자 및 기여율 기재의 중요성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가명의로 등록하여도 발명자 게재권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직무발명특허로 등록되었을 때 및 유상처분 되었을 때 각각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결정 및 기여율에 따른 지급금액 결정에 있어 오류가 없도록 해야한다. 발명기관의 연구원 및 특허관리 담당자는 발명자 및 기여율 기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권의 '공유'

1. 특허권의 '공유'

하나의 특허권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유' 권리인 경우 발생하는 제한사항

가. 지분양도 시 제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고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설정할 수도 없다. (특허법 제99조 제2항)

나. 실시권설정 시 제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당해 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할 수 없다. (특허법 제99조 제4항)

다. 그 외 제한

출원·등록 시 제한, 심판청구·심결취소소송 시 제한 등이 있다.

3. 공유자의 자유실시가 가능한지?

특허권의 공유인 경우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자기 지분에 관계없이 당해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특허법 제99조 제3항)

4. 공유 지분 등록

추후 특허권의 실시에 따른 수익 배분 등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미리 지분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할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62조 제2항)

**사용자의 업무범위(판례)****【판례】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발명자는 통신기계 기구 및 관련기구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하는 회사의 “타임머신 팀”에 근무하면서, “문자입력코드 발생방법 및 장치”를 개발하여 회사에 직무발명을 신고하면서 이와 관련된 2건의 특허를 출원 등록 받았다.

이 발명에 대해 발명자는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자유발명에 해당됨에도 직무발명으로 오인되어 회사 명의로 특허등록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통신기계기구의 제작, 판매를 그 설립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이동전화단말기를 주요 생산품목으로 하고 있으며, 위 발명들은 이동전화단말기에 이용될 수 있는 문자입력방식에 관한 발명이므로 발명진흥법 제10조(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발명 당시 발명자의 직무는 정보통신부분의 신상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으로 실제 한글입력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 개발에 주력한 결과 발명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발명 행위는 발명자의 직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발명들이 직무발명이 아님을 전제로 각 양도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발명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가합 13977. 2002. 8. 22】

사용자의 업무범위(사례)**【판례】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현미경을 사용하여 약품을 검사하고 혹은 미생물을 연구하는 약품회사의 종업원이 현미경 자체를 개량하는 발명을 한 경우에, 사용자의 업무범위는 약품의 검사와 연구행위이고 현미경을 개량하는 것은 광학기구 관련 회사의 사업범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 종업원의 발명은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 (사례1)

【사례】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

악기회사의 공작과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공작과 내 여러 부서에서 숙련공으로 근무하면서 금형제작, 센터핀 압입기 제작, 치공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가 피아노 부품의 하나인 플랜지의 구멍에 붓싱을 효과적으로 감입하는 장치를 고안한 경우, 위 사원은 근무기간중 상기와 같은 고안을 시도하여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대판 1991. 12. 27 91후 1113】

직무발명 해당 여부 (사례2)

【사례】 당해 발명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발명에 대한 명령을 받지 않거나 구체적 과제도 부여받지 않는 경우의 직무발명 성립여부

종업원이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받지 않았지만 그 종업원이 담당하도록 정해진 직무내용 또는 책임범위가 당연히 발명을 할 것으로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속한다.

발명의 완성 당시에 석탄질소 제조소에 관한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기술부문 담당 최고책임자의 지위(이사)에 있었고, 또 회사의 석탄질소 생산 향상을 위하여 그 제조소의 개량 고안을 시도하고 그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가 한 석탄질소제조소에 관한 고안은 종업원으로서의 직무에 속한다.

【일본 최고재판 1968. 12. 13】

**직무발명 해당 여부 (사례3)****【사례】** 직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법랑옥조 판매회사의 시장개발, 판매, 기획을 직무로 하는 개발부장이 법랑옥조와 동종의 물건을 연구·완성하여 실용신안을 얻은 경우 그 고안은 회사의 업무범위에는 속하지만 그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고안으로 될 수 없다.

【일본 동경고판 1969. 5. 6】

직무발명 해당 여부 (사례4)**【예제】** 업무범위와 직무범위

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하는 A회사의 B휴게소 호두과자 판매원이 기존의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를 개량하여 자동으로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를 발명한 경우, ① A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② 호두과자 판매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 ⇒ ① A회사의 주업무(정관에 기재된 업무)는 고속도로의 시설관리로, B휴게소에 설치된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는 기계제작회사와 계약에 의해 공급받아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업무에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의 설계 제작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이며,
- ⇒ ② 호두과자 판매원의 직무는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주업무이고, 부대업무는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를 관리하고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두과자 판매원이 기존의 기계를 개량하여 자동으로 호두과자를 만드는 기계의 발명은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고 종업원의 직무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호두과자 판매원의 자유발명이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 (사례5)**【예제】**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과거에 A전자회사의 TV 영상회로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자가 A전자회사 TV 완성품 검사부서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TV회로에 관한 발명과 TV의 품질검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모두 직무발명에 속한다. 여기에서 TV회로에 관한 발명은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고, TV의 품질검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다. 그러나 TV 영업부에 근무하는 자가 발명한 새로운 TV회로는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 발명이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 (사례6)**【사례】**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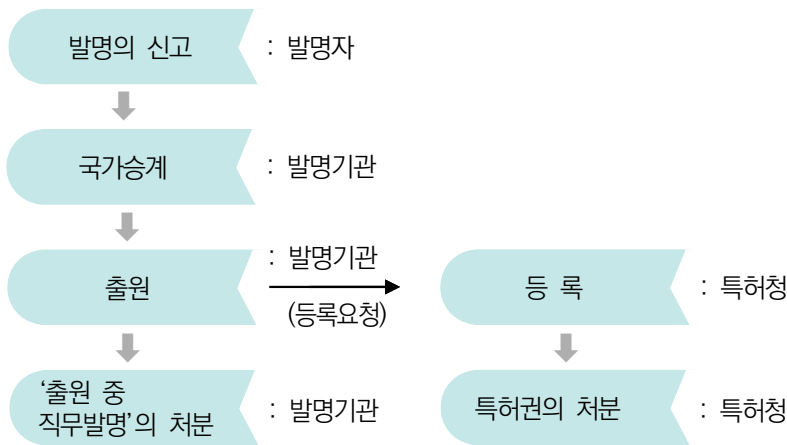
원고가 담당하는 교통관련 행정업무는 (생략) 불법 주·정차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에 불과할 뿐, 이 시간 제1항 고안과 같은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업무로 하지 않는 점,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시스템을 개발하라는 과제를 부여받거나 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 등을 지원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을 고안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특허법원 2010허 4854】

2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관리

부록2

국가직무발명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의 단계인 국가승계, 출원, ‘출원 중 직무발명’ 처분은 발명기관의 장이 담당하며, 국가직무발명특허권으로 등록된 후의 관리는 특허청장이 담당한다.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 당시에 발명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발명의 신고

(관련법령: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직무발명신고서에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및 직무발명의 요약서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국가승계

(관련법령: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민간인 발명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은 국가는 발명기관의 소속 공무원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하며, 국가가 승계하는 권리에겐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발명기관의 장은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승계 결정을 한다.

(3) 출원

(관련법령: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26조(국가명의출원 시의 부기 명칭))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승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등록

(관련법령: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국가직무 발명특허권등의 등록))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국가직무발명 특허권등의 등록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이미 등록된 권리를 국가승계하거나,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출원 및 심사를 거친 후 ‘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에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등록결정서(이미 등록된 권리인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한다.

3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국가직무발명특허) 처분의 원칙

기존에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2024년 11월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통상실시, 전용실시 및 매각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유상으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무상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실시권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시’란 구체적으로 ① 특허발명이 물건에 관한 발명일 경우, 그 물건의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② 특허발명이 방법의 발명일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③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일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와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3호)

전용실시권은 설정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통상실시권은 이러한 독점적 실시권리는 없으며 단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 할 수 있을 뿐이다.

(2) 유상처분의 원칙

국가직무발명특허의 처분은 유상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인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 포함)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처분의 절차

(1) 처분의 방법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하며,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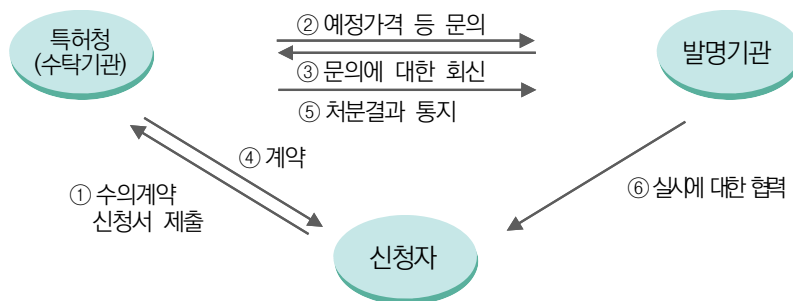
수의계약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당해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첨부하여 국가직무발명특허 처분·관리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분의 기간

특허청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 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단, 당해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 준비기간과, 당해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잔여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3) 처분의 절차



(4) 예정가격의 결정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발명기관을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산정】

$$\text{실시료 예정가격} = \text{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times \text{제품의 판매단가} \times \text{점유율} \times \text{기본율}$$

총판매예정수량은 실시기간 중 매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이고, 제품의 판매단가는 실시기간 중 매연도별 공장도 가격으로 계산하며, 점유율은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당해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5) 계약서의 작성

특허청장은 처분하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6) 처분결과의 통지

특허청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처분

국가직무발명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은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발명기관의 장이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과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한다.



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공유

(1) 공유의 개념

특허권의 공유라 함은 특허권을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특허권 본래의 대세적 효력에는 변화가 없으나 공유특허권의 처분행위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진다.

(2) 특허권의 공유에 따른 제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특허법 제99조 제2항),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특허법 제99조 제4항)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공유의 문제점

공유인 국가직무발명특허의 경우 국가는 자기실시를 하기가 어려우나 민간의 경우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공동관리자인 민간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많은 예산과 설비를 투자하여 발명한 특허임에도 국가가 처분행위를 하는데 많은 제한이 가해진다. 따라서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공유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퇴직 후의 발명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즉, 퇴직 후에 한 발명이 퇴직 전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발명진흥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공무원 등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무제공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으나, 발명을 완성하기 직전에 퇴직했을 경우, 또는 재직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기간에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발명완성에 큰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발명진흥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합리적으로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발명의 완성당시에 공무원 등의 지위에 있었던 자가 재직 중에 발명을 완성하고 묵비로 있다가 퇴직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속한다. 그 이유는 공무원 등이 「발명을 하게 된 행위」는 발명자가 공무원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안 발명을 착상하여 완성하기까지 그 발명을 위해서 제공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 측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연구관리(예를 들면, 연구 일지 작성의 의무화 및 체크 등)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판례상 기업 내에서 이루어진 발명은 퇴직 후에도 공공의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발명을 추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례에 근거해서 사용자와 종업원의 계약에 이른바 추적조항(trailing clause)을 마련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추적조항은 퇴직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한 발명으로 전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전 사용자가 승계 하도록 하는 특약 조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적조항은 종업원의 새로운 고용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간주하는 등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 퇴직 후 출원한 발명의 처리**

회사의 취업규칙 중 ‘종업원은 사업상 행한 발명 또는 연구에 관하여 그 조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이 경우 회사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퇴직 직후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발명자가 회사에 재직 중 발명을 완성함과 동시에 발명자로부터 회사로 이전했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 대판지판 1979. 5. 18】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 관련 법령 내용

1

발명진흥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7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27.>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③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④ 특허청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6.> [본조신설 2013. 3. 22.] [제목개정 2024. 2. 6.]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1. 15.>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4. 2. 6.>



③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4. 2. 6.> [제목개정 2024. 2. 6.]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2. 11. 15.>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2022. 11. 15.>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⑤ 제4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경우 제4항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정하여 그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종업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⑦ 공공연구기관의 장과 종업원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등의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상호 협의할 수 있다.

⑧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그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제목개정 2013. 7. 30.]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3. 7. 30.]

-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7. 30.〉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0. 2. 4., 2021. 4. 20., 2022. 2. 3., 2024. 2. 6.> [전문개정 2013. 7. 30.]



2

특허법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2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2025. 1. 21.>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6. 11.] [시행일: 2025. 7. 22.]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21. 8.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8. 17.> [전문개정 2014. 6. 11.]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3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부록3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5001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19., 2024. 11. 12.>

1. “직무발명”이란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 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 다.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 라.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2조의2(적용 제외)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3조(업무의 관장) ①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8. 28., 2024. 11. 12.>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심판·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4.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10. 19., 2024. 11. 12.>

1.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
2.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등 출원
3.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전문개정 2010. 7. 26.]

제3조의2 삭제 <2011. 9. 30.>

제4조 삭제 <2021. 10. 19.>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0. 19.,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8. 28., 2021. 10. 19., 2024. 11.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신설 2021. 10. 19.>

④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신설 2021. 10. 19., 2024. 11. 12.>

⑤ 삭제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21. 10. 19.]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① 발명기관의 장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승계한 때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 등 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2024. 11. 12.>

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 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1. 12.> [전문 개정 2010. 7. 26.]

제8조(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 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 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8., 2024. 11. 1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8. 8. 28.]

제9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등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실용신안등록결정·디자인등록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3. 23., 2024. 11. 12.>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24. 11. 12.>

1. 특허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특허청장
3. 승계청: 발명기관의 장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24. 11. 12.]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특허청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본조신설 2010. 7. 26.] [제목개정 2024. 11. 12.]

제10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① 삭제 <2024. 11. 12.>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3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24. 11. 12.]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2.>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2024. 11. 12.>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공공기관에 필요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12조(의견청취 등)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13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개정 2011. 9. 30.,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24. 11. 12.]

제14조(처분결과와 통지) ① 특허청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2.>

1. 특허권: 각 권리마다 50만원
2.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3.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2.]

제18조(기여보상금)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여보상금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2.]

제19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여보상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 11. 12.>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신설 2011. 9. 30., 2021. 10. 19.>

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제3자가 지분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24. 11. 12.]

제20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여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39조를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4. 11. 12.]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공개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③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분 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28.,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21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본조신설 2018. 8. 28.]

제22조 삭제 <2024. 11. 12.>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 및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등”으로,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전문개정 2024. 11. 12.]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발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2024. 11. 12.>

1. 제5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에 관한 사무 (특허청장으로 한정한다)
4. 제13조에 따른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한 사무(발명기관의 장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발명진흥법」 및 이 영에 따른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부 칙 〈대통령령 제35001호, 2024. 1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허권등 및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8조 제1항(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관 포상금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계정에서의 지급 대상으로 본다.

제3조(처분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특허권등 및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관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특허권등 및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기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록3

[시행 2024. 11.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1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전문개정 2011. 10. 7.]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을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을 적을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

③ 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1. 10. 7.]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승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전문개정 2011. 10. 7.]

제4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2. 특허결정서·실용신안등록결정서·디자인등록결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 10. 7.] [제목개정 2024. 11. 12.]

제5조(국가기관의 무상실시)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상실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전문개정 2011. 10. 7.]

제6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특허청장 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2024. 11. 12.>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전문개정 2011. 10. 7.]

제7조(처분의 공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2024. 11. 12.> [전문개정 2011. 10. 7.]

제8조(수의계약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1.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영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 규모
3.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전문개정 2011. 10. 7.]

제9조(계약서의 작성) ①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표시, 전용 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③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 2024. 11. 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7.]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특허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의 평가에 관한 전문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전문개정 2011. 10. 7.]

제11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24. 11. 12.>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등의 매매 실효가격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 11. 12.>

실시료 예정가격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2.>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특허청장이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 11. 12.>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전문개정 2011. 10. 7.]

제12조(처분결과와 통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 특허권등을 처분한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내용
2. 처분에 따른 대금(貸金)의 수납에 관한 사항
3.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0. 7.]

제13조(대장의 작성·비치) ①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분기별로 특허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7.]

제14조 삭제 <2024. 11. 12.>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1호, 2024.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시행 2024. 12. 3.] [특허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등”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3. “발명기관”이란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가 소속된 국가기관을 말한다.
4.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의 무상실시요령

제3조(무상실시 대상 및 기간) ① 특허청장은 영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또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이후 3년 동안 미실시한 경우에는 미활용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영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③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무상실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제4조(무상실시신청) ① 이 고시에 따른 무상실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무상실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유서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사업화 추진일정
2. 사업화 자금 수요 예측 및 조달 계획
3.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시설규모 포함)
- ④ 실시하려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공동권리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무상실시 신청서 제출 시 공동권리자의 통상실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자 수의 제한) ① 특허청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실시자 수를 제한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2. 신청순서

제6조(무상실시의 제한)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 제3조제2항에 의한 최초의 무상실시 기간 종료 후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실시계약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이 연장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이후 제3자와 실시계약을 맺을 경우엔 유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제7조(중소기업우대) 중소기업에서 제3조제2항에 의한 무상실시 기간 종료 후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해 재실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실시료 산정시 기본율을 2%로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전용실시요령

제8조(전용실시권자의 결정) ① 전용실시권의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자(이하 “입찰자”라 한다)는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입찰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화 가능성, 입찰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특성, 입찰금액, 전용실시권자 선정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고려하여 전용실시권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최소실시료) ① 전용실시권자는 실시료의 일부로서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하 “최소실시료”라 한다)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거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소실시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전용실시계약의 갱신) ①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이하 “전용실시계약”이라 한다)이 만료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명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용실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가 사업화하여 발생한 수익(이하 "사업화수익"이라 한다)이 전용실시권자가 사업화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전용실시권자가 사업화를 위해 후속연구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에 필요한 시험을 하려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전용실시권자가 계속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전용실시권자의 기술이나 설비가 아니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5. 발명자의 이직이나 퇴직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전용실시권자 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수익이 전용실시기간에 비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발명기관의 장,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용실시계약의 갱신을 허락할 수 있다.
- ③ 전용실시계약의 갱신은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에 관한 사업화 실적이 존재하거나 사업화 노력을 계속한 경우에 한한다.
- ④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계약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전용실시계약의 갱신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⑤ 전용실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특허청장과 전용실시권자는 최소실시료, 전용실시기간 등의 사항을 협의하여 기존의 계약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장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제11조(보상금등의 지급기준) ① 특허청장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함에 있어 별표 1 ‘보상금등의 감액기준’을 고려하여 보상금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에서 직접비용(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사용한 금액,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규정의 준용)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

제5장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

제13조(수탁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아래 제1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 거래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관리 업무계획,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신청기관의 조직·인력·시설·장비 등 현황
5. 그 밖에 수탁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14조(수탁대상기관의 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허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 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휘·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 ① 특허청장은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이 행하는 행위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업무에 관련된 지시·조치·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의 변경이나 조직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및 영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특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 등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영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당한 실시료 이외의 금전이나 물품을 실시자 또는 실시와 관련된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⑦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을 위해 특허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업무 범위 등)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계약서에 기재된 발명기관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업무
2.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홍보 등 관리



제17조(처분절차 및 처분방법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16조 본문에 따라 위탁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처분절차 및 처분방법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서류와 계약서를 구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체결 완료문서 등을 특허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계약기간 만료 후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에 송부하여 실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실시권자가 실시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계약일 또는 특정 기일을 기준으로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납부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처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실적보고서 등 제출)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적보고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대장의 작성·비치)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요령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특허청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6장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심판·소송

제21조(심판 수행체계) ①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하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특허심판이 청구되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의 심판규정을 준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하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이 청구되어 심판청구서 부분이 특허청에 송달되면, 특허청장은 발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③ 통보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심판당사자를 지정하여 발명자 및 관계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심판업무를 총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특허심판의 심결문이 특허청에 송달되면 특허청장은 즉시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패소하였을 경우엔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심판 대리인의 선임) ① 심판당사자는 심판업무를 총괄 대응하며 청구된 심판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다.

② 심판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후 즉시 특허심판원에 심판대리인 선임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하며, 심판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소송 수행체계) ① 국가공무원등이 발명 또는 창작하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해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가 발생하였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소장 부분이 특허청에 접수되면 특허청장은 발명기관의 장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업무를 수행한다.

③ 발명기관의 장은 법원 출석, 변론, 검찰청 보고 등 소송의 진행과정을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소송 대리인의 선임) ① 발명기관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즉시 특허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은 소송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 명의 출원 시의 부기 명칭)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부기하는 발명기관의 장의 명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그 기관장의 명칭
2.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그 합의제 행정기관의 명칭
3. 제1호 및 제2호로 정하는 기관의 하위기관의 경우 1차 소속기관으로만 한정하며 그 기관장의 명칭

부 칙 <제2024-23호, 2024.12.0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금등의 감액기준

위반사항	위반 주체	보상금 종류	관련 법령	감액기준
영 제5조의 직무발명 신고는 하였으나 영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발명자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영 제16조 영 제17조	보상금 전액을 미지급
영 제5조 및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발명자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영 제16조 영 제17조	보상금 전액을 미지급 하거나 50%를 감액하여 지급
영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발명자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영 제16조 영 제17조	보상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
	발명기관	기관포상금	영 제18조 제1항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발명기관 소속의 자	기관포상금	영 제18조 제1항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91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 21.>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이란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공립 연구기관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



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9. “기술자산유동화”란 기술등 및 기술등으로 인한 채권·지분과 그 밖의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1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1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
13. “창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으로서 창업을 하여 창업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1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제5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화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공공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할 때에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24. 1. 9.>

1. 기술지주회사 및 제21조의4에 따른 출자회사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적정 배분에 관한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등을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민간기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관리·처분[현물출자(現物出資)는 제외한다]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그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술등의 관리·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4. 12.]

제22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① 정부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권리화되어 기술 수요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유 기술의 내용 등을 기술진흥원에 등록한 자에게 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기업(국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기술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을 이용하게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 공공기술의 이용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⑤ 공공연구기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그 전담조직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이용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국공립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3. 기술이전·사업화
4.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관련 업무
5. 전담조직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⑦ 제3항에 따라 참여기관등에 귀속된 공공기술의 관리, 제4항에 따른 공공기술의 이용 절차·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우선권, 제6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양여 및 사용·수익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자와 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자 및 참여기업에 그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진흥원·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4. 12.]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8호, 2024. 4. 30., 타법개정]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出捐)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 받은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 8. 17.\]](#)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및 기상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17., 2019. 7. 30.〉](#)
[\[전문개정 2010. 8. 17.\]](#)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이하 “기술거래사”라 한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제2항의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지침서를 보유할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것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술거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8. 17.]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 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 인력 및 예산, 보유 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 ②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사업화 계획과 추진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30.>

1. 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2. 특허 등의 출원·등록·관리·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와 해당 업무의 위탁
3. 기술이전·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배분
4.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
5.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전문개정 2010. 8. 17.]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연구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9.>

1.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전문개정 2010. 8. 17.]

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7. 3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배정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기술료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8. 17.]

제25조의2(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술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 등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기부채납을 한 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2. 기술등의 개발자: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본조신설 2010. 8. 17.]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국가등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 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9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협약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③ 국가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제9조제3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술의 이전·사업화에 관한 정보가 기술진흥원에 등록된 날부터 1년(신속한 기술이전·사업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공공연구기관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법 제2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전문개정 2010. 8. 17.]
-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사용·수익하려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그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부·양여, 사용·수익의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8. 17.]
-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17.]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 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7.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 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마. 삭제 <2022. 1. 6.>

바. 삭제 <2022. 1. 6.>

사. 삭제 <2022. 1. 6.>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변경·해약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조치, 제4항에 따른 지원, 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8.>



9

소득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1. 9. 15., 2012. 2. 1., 2013. 1. 1., 2013. 3. 22., 2014. 1. 1., 2014. 3. 18.,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3. 20., 2018. 12. 31., 2019. 12. 10.,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9., 2022. 8. 12., 2022. 12. 31., 2023. 8. 8., 2023. 12. 31., 2024. 12. 31.〉

(생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생략)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생략)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생략)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



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부록3

국가 직무발명특허권 관련 법령 내용

10

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 3. 30.>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4

2024년 주요개정내용

1

국가직무발명특허 관련 법령 개정 ('24)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5001호, 2024. 11. 1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1호, 2024. 11. 12.,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시행 2024. 12. 3.] [특허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2

국가 불승계 결정 시에만 서면통보 (자동 양도)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국가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개정 이전]

- 승계결정 및 불승계 결정 모두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명자가 양도한 시점에 승계

○ [개정 이후]

- 불승계 결정 시에만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 불필요한 양도 절차를 없애고 직무발명 승계결정 시부터 자동 양도

3 발명기관장 명칭 규정 신설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26조(국가 명의 출원 시의 부기 명칭)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부기하는 발명기관의 장의 명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그 기관장의 명칭
2.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그 합의제 행정기관의 명칭
3. 제1호 및 제2호로 정하는 기관의 하위기관의 경우 1차 소속기관으로만 한정하며 그 기관장의 명칭

○ [개정 이전]

-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관적이지 못한 운영

○ [개정 이후]

-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가능

4 통상실시 원칙 폐지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① 〈삭제〉

○ [개정 이전]

- 통상실시 원칙 / 전용실시 및 매각은 특정 조건에서 가능

○ [개정 이후]

- 처분방식 자율 결정

5 무상실시조건 추가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②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정 이전]

- 농·어민, 국가기관

○ [개정 이후]

- 농·어민, 국가기관, 중소기업

6 출원 중 직무발명 처분대금 징수권한 이양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 [개정 이전]

- 처분권한: 발명기관 / 징수권한: 특허청

○ [개정 이후]

- 처분권한: 발명기관 / 징수권한: 발명기관
- 이에 따라, 출원 중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지급주체도 발명기관으로 변경
- 처분 ⇨ 징수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

7

개정법령 적용시점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5001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허권등 및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보상금, 처분 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8조제1항(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관포상금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에서의 지급 대상으로 본다.

○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 보상금지급 시기제한 규정(2년) 삭제 ⇨ 국가재정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

계약 A		계약 B		계약 C	
계약일자	보상금 지급	계약일자	보상금 지급	계약일자	보상금 지급
5년		5년		5년	

2024.
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처분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특허권등 및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7조의 개정규정]

: 출원 중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지급주체 변경 (특허청장 ⇨ 발명기관장)

계약 A		계약 B		계약 C	
계약일자	보상금 지급	계약일자	보상금 지급	계약일자	보상금 지급
특허청장		특허청장		발명기관장	

2024.
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기관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특허권등 및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기관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8조의 개정규정]

: 기관포상금 ⇨ 기여보상금

계약 A		계약 B		계약 C	
계약일자	보상금 지급	계약일자	보상금 지급	계약일자	보상금 지급
기관포상금		기관포상금		기여보상금	

2024.
11.12.

5

직무발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

직무발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발명의 신고)

국가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 징계책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민사책임

〈민 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형사책임

〈형 법〉

제355조(횡령, 배임)

-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국가직무발명특허 보상금 미지급 또는 감액 지급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
요령 [별표1] 보상금등의 감액기준

국가직무발명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편람

발행일 2025년 4월

발행처 특 허 청

산업재산정책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전 화 (042) 481-3565

F A X (042) 472-8408

I S S N 2983-3744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